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8171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비준동의 필요성	3
2. 「범죄인 인도법」과의 관계	5
3. 주요 내용 검토	7
4. 종합 의견	16
※ 참고자료	17
1.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현황	18
2. 최근 10년간 국제 범죄인인도 청구 현황	20
3.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21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5년 2월 14일
3. 회부일자 : 2025년 2월 1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관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19개조로 구성)

- 가.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로 함(안 제2조).
- 나.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나 군법에 따른 범죄인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함(안 제3조).
- 다. 양 당사자는 이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도망범죄인의 국적만을 사유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
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
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함(안 제5조).

라.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망범죄인
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이 조약은 관련 범죄가 이 조약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청구에 적용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추진경위

- 2022. 10. 문안 교섭 개시
- 2024. 3. 최종 문안 합의
- 2024. 9. 30. 제42회 국무회의 심의
- 2024. 10. 8. 서명(싱가포르)

Ⅲ. 검토의견

1. 비준동의 필요성

가. 범죄인인도 제도 개요

범죄인인도 제도는 한 나라의 형법 및 기타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가 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주는 제도로, 형사집행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¹⁾

오늘날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인의 해외 도피 및 외국 범죄인의 국내도피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범죄인인도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범죄인 인도는 조약 체결이 없는 경우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각국은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범죄의 수사 및 범죄인 신병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²⁾의 체결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

1) 2020토1, 서울고등법원, 2020.7.6.

2)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은 모두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형사사법공조의 경우에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여 서류기록의 제공, 증거물의 인도, 진술청취, 물건과 사람의 소재파악 등 범죄수사 및 재판상의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국가간 범죄인인도의 경우에는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도망범죄인의 처벌을 위한 본국송환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³⁾」
은 인도 의무(안 제1조), 인도 대상 범죄(안 제2조), 절대적 및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안 제3조 및 제4조), 자국민의 인도(안 제5조), 긴급인
도구속(안 제8조), 특정성의 원칙(안 제15조) 등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동안 체결·발효되거나 서명된 범죄인인도 조약과 일부 구체적
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최초로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이래
25년 9월 기준 총 34개국과 양자 간 조약을 체결·발효하였으며, 코스
타리카와의 조약은 서명이 완료된 상태임.⁴⁾

범죄인인도 조약은 이해관계가 많은 국가 상호간에 양자조약의 형
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는 다자간 협약의 형태로 체결되기도
하며 이러한 협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등이 있음.⁵⁾

우리나라도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대하여 2007년 11월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여 2009년 2월 가입초청을 받은 후, 2011년 3월
국회의 가입 비준동의를 받은 바 있음.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에 따르면,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그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한 합의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명칭이 조약, 협약, 협정 등인 것과 관계없이 합의의 문언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 협정 등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4) 【참고자료 2】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현황 참조

5) 이은주, 범죄인인도와 인권보호, 법과정책 제15집 제1호, 2009, p.195

나. 국회 비준동의 사유

동 조약안은 인도 대상 범죄(안 제2조),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안 제3조) 등에 관하여 국내법인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60조제1항6)에 따라 비준동의를 받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음.⁷⁾

2. 「범죄인 인도법」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1988년 제정한 「범죄인 인도법」은 총 5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에 관한 원칙, 인도 대상 범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및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등 범죄인 인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인도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과,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6) 「헌법」 제60조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4】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참조.

(대검찰청예규)을 두어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법령을 갖추고 있음.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인도 조약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 제4조(상호주의)에서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에서는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범죄인인도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법」 제4조의 상호주의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 또는 인도 청구할 수 있고,⁸⁾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조약이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겠음.

8) 미국, 호주 등과 같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독일과 같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의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국가로 나눌 수 있음.

3. 주요 내용 검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은 세부사항에 있어 일부 다른 점이 있어도 체계나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과 그동안의 범죄인인도 조약 및 국내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표 2] UN 모델조약과 동 협정의 주요내용 비교 등

	범죄인인도에 관한 UN 모델조약	한-싱가포르 간 범죄인인도 조약	범죄인 인도법
인도 대상 범죄	- 최소 1년/2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제2조1항) -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이미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잔여형기가 최소 4개월/6개월 이상 남은 범죄 (제2조1항)	-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제2조제1항) - 범죄인이 청구당사자의 형 집행을 위해 수배 중인 경우, 잔여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인도 허용(제2조제2항)	- 해당 범죄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제6조)
쌍방 가벌성	- 원칙상 쌍방가벌성 충족 필요(제2조1항)	- 좌동(제2조제1항)	- 좌동(제6조)
특정성의 원칙	-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피청구국이 동의한 그 밖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인도 전에 행한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국에서 기소·구금·재판받거나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않음(제14조)	-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죄명에 관계 없이 인도가 허용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드러난 그 밖의 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인도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음(제15조제1항)	-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허용 범죄 외의 범죄로

	범죄인인도에 관한 UN 모델조약	한-싱가포르 간 범죄인인도 조약	범죄인 인도법
			처벌받지 않고 제3국으로 인도되지 않음(제10조)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라고 피청구당사국이 간주하는 경우(제3조a호)	- 좌동(제3조제1항가호,)	- 좌동(제8조)
	- 군사법상 범죄이나 일반 형사법상 범죄가 아닌 경우(제3조c호)	- 좌동(제3조제1항마호,)	- 無
	- 피청구국에서 인도 요청된 범죄에 관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3조d호)	- 도망범죄인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 또는 그와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어느 국가 또는 영역에서 처벌되거나 무죄 선고 또는 사면을 받은 경우 (제3조제1항나호)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제7조2호)
	- 청구국/피청구국 국내법상 시효 경과(제3조e호)	- 無	- 좌동(제7조1호)
	- 범죄인의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그를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인도가 청구되었거나 범죄인이 위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조b호)	- 좌동(제3조제1항다호 및 라호)	- 좌동(제7조4호)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 인도가 청구된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제4조a호)	- 좌동(제5조)	- 좌동(제9조1호)
	- 인도가 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관할에서 행해진 경우(제4조f호)	- 좌동(제4조나호)	- 좌동(제9조2호)
	- 인도가 청구된 범죄인의 개인적 정황상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4조h호)	- 좌동(제4조다호)	- 좌동(제9조5호)

가. 인도대상 범죄(안 제2조)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인도대상범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2년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UN 범죄인인도모델조약(UN Model Treaty on Extradition, 이하 ‘UN 모델조약’)」⁹⁾에서는 인도대상범죄의 요건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국내법인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¹⁰⁾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도대상 범죄의 축소는 범죄인 인도제도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도대상 범죄의 요건을 「UN 모델조약」 및 국내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봄.

한편, 인도대상 범죄인지를 판단할 때 잔여형기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조약안에서는 범죄인의 인도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잔여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인도를 허용하고 있음(안 제2조제2항).

「UN 모델조약」 제2조에서도 잔여형기가 최소 4~6개월 이상 남은 범죄인의 경우에만 인도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법」에는 잔여형기를 고려하는 규정은 없음.

9) UN 모델조약은 UN 총회의 결의 형태로 채택된 것으로, 그 성격은 각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고차원적인 목표를 명기하는 기본 모델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동 조약은 국제사회의 합의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UN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조약을 개정하는 경우 모델조약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10) 이를 최소성의 원칙(minimum gravity)이라고 함. 범죄인인도에는 많은 경비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중요성이 있는 범죄가 인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 기준은 법률, 조약에 따라 다름(유병화 외, 「국제법」, 법문사, 2002, p. 641 참조).

이러한 최소 잔여형기 요건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양자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¹¹⁾ 범죄인 인도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잔여형기와 비슷하거나 더 긴 경우 절차 진행 중 형기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¹²⁾

또한,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인도 대상 범죄를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제한함으로써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의 법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다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절대적,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3조에서는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라고 피청구당사자가 결정하는 경우, 인도가 청구된 범죄 또는 그와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어느 국가 또는 영역에서 처벌되거나 무죄 선고 또는 사면을 받은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내법인 「범죄인 인도법」과는 달리 “인도 청구가 피청구당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제2조제7항: 범죄인인도 요청이 청구국의 법원에서 인도가능한 범죄로 자유형을 받은 자에 관련된 경우 잔여형기가 4월 이하이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제2항: 청구국의 법원이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자유형을 선고한 자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최소한 4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그 인도가 허용된다.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제2조제2항: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12) 윤정은,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p. 53.

사자의 법의 군법에 따른 범죄이나 피청구당사자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는 아닌 경우”를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는 안 제4조에서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조라호는 국내법과 달리 “인도가 국방 또는 외교 사안과 관련하여 피청구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별도의 임의적 거절 사유로 규정하여 국내법에 대한 특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범죄인인도조약과 UN모델조약에서는 당사국 영역 밖에서 범해진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이 유사한 상황의 경우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범죄인인도를 재량으로 허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¹³⁾하고 있는바,

동 조약안도 제4조마호에서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어느 한쪽 국가의 영역 밖에서 행해졌고,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영토 밖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당사자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범죄인인도를 재량으로

13) 윤정은,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38호), 외교부 국제법률국, 2015, p.55.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인도(안 제5조)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범죄인으로 인도되는 자는 청구국 또는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¹⁴⁾

이에 따라 안 제5조제1항본문에서도 “어느 당사자도 이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5조제1항단서에서 “피청구당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동조제2항에서 “도망범죄인의 국적만을 사유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는 기소 의무를 부과하여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완화하고 있음.

「UN 모델조약」은 자국민임을 이유로 한 인도 거절을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범죄인 인도법」 제9조¹⁵⁾에서도 이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하여 자국민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재량으

14) 이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이 아니고 독일·프랑스를 위시한 다수국의 헌법이나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영미와 같이 외국에서의 범행을 원칙상 국내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국민이라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가 있음(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6, p. 393).

15)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 5. (생략)

로 인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범죄인 인도 제도는 침해된 법익이나 증거수집의 관점으로 보아 범죄인은 범죄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생성된 제도이므로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바¹⁶⁾,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을 수용하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당사자의 사법당국에 기소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회피를 방지하도록 규정한 동 비준동의안은 양자 간의 균형을 취한 조치로 보임.

라. 긴급인도구속(안 제8조)

안 제8조에서는 긴급 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 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싱가포르공화국 검찰청 간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 중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⁷⁾.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 긴급한 경우에 우선 피청구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구속을 청구하고 사후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만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하는 방법과 함께 중앙당국인 대한민국 법무부와 싱가포르공화국 검찰청이 직접 접촉할 수 있

16) 이훈규·신의기, 「범죄인 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61-62

17) 「범죄인 인도법」 제24조에서는 외교부장관이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아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바. 특정성의 원칙(안 제15조)

특정성의 원칙이란 청구국에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가 아닌 인도 이전에 범한 다른 범죄를 이유로 기소·처벌되지 않으며, 또한 제3국으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범죄인 인도의 일반적 원칙임.

동 조약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청구당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피청구당사자의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피청구당사자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 사람이 인도되기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범죄로서 인도대상범죄의 형기를 갖춘 경우 그 사람이 청구당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

또한,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인도되는 사람이 청구당사자의 영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떠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특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특정성의 원칙은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많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채택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청구국이 인도받은 자를 기소·처벌하거나 제3국으로 재인도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의 동의를 요하는 일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한 최근의 경향이 인도 대상 범죄의 확대, 인도 거절사유의 축소,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및 특정성의 원칙을 완화하여 형사사법공조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바,

향후 특정성의 원칙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인도 대상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종합 의견

범죄인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인들의 해외도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됨.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그동안 체결하여 온 범죄인인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적절히 규정하고,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절차를 마련함은 물론 각종 국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70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현황

【참고자료 2】 최근 10년간 국제 범죄인인도 청구 현황

【참고자료 3】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현황

□ 다자 범죄인 인도 조약: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51개 당사국)

(2025. 9월 기준)

번호	국명	기탁일	발효일	가입국
0	유럽평의회	2011.09.29.	2011.12.29	<유럽평의회 회원국: 46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u>불가리아</u>,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u>프랑스</u>,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u>스페인</u>,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유럽평의회 비회원국: 5개국> 칠레, 이스라엘, 한국, <u>남아공</u>, 러시아

* 밑줄친 국가는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

□ 양자 조약

(2025. 9월 기준)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1	호주	1990.09.05	1991.01.16
2	캐나다	1994.04.15	1995.01.29
3	스페인	1994.01.17	1995.02.15
4	필리핀	1993.05.25	1996.11.30
5	파라과이	1996.07.09	1996.12.29
6	칠레	1994.11.21	1997.10.01
7	멕시코	1996.11.29	1997.12.27
8	미국	1998.06.09	1999.12.20
9	몽골	1999.05.31	2000.01.27
10	아르헨티나	1995.08.30	2000.11.09
11	태국	1999.04.26	2001.02.15
12	브라질	1995.09.01	2002.02.01
13	중국	2000.10.18	2002.04.12
14	뉴질랜드	2001.05.15	2002.04.17
15	일본	2002.04.08	2002.06.21
16	우즈베키스탄	2003.02.12	2004.11.23
17	베트남	2003.09.15	2005.04.19
18	인도	2004.10.05	2005.06.08
19	페루	2003.12.05	2005.11.16
20	과테말라	2003.12.12	2006.02.20
21	홍콩	2006.06.26	2007.02.11
22	인도네시아	2000.11.28	2007.11.16
23	프랑스	2006.06.06	2008.06.01
24	알제리	2007.02.17	2008.10.24
25	불가리아	2008.10.01	2010.04.08
26	캄보디아	2009.10.22	2011.10.01
27	카자흐스탄	2003.11.13	2012.09.10
28	쿠웨이트	2007.06.14	2013.08.28
29	남아공	2007.05.03	2014.06.20
30	말레이시아	2013.01.17	2015.04.15
31	UAE	2014.02.28	2017.05.17
32	이란	2016.05.02	2018.03.08
33	마카오	2019.10.23	2021.03.11
34	키르기즈	2018.11.14	2021.09.11

* 코스타리카('05.9월 서명, 우리측 국내절차 완료)

【참고자료 2】 최근 10년간 국제 범죄인인도 청구 현황(2015~2024년)

(단위 : 건(%))

연 도	구 분	계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인도청구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2015		23(100)	4(17)	19(83)
2016		16(100)	3(19)	13(81)
2017		36(100)	8(22)	28(78)
2018		23(100)	4(17)	19(83)
2019		40(100)	13(32)	27(68)
2020		49(100)	9(18)	40(82)
2021		54(100)	18(33)	36(67)
2022		39(100)	12(31)	27(69)
2023		56(100)	9(16)	47(84)
2024		58(100)	9(16)	49(84)
계		394	89(23)	305(77)

※자료: 법무부 국제형사과

【참고자료 3】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1. 주요 내용

- 이 조약안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인도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 재판이나 형의 부과 또는 집행의 목적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기 위하여 인도 의무, 인도 대상 범죄, 인도 거절 사유 및 인도 청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관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데,
 - 이 조약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임.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이 조약안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범

죄인 인도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 인도법」이 있음.

○ 이 조약안의 규정과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에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범죄인 인도법」과 내용이 다른 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이 우선함을 예정하고 있음.

- 먼저, 조약안 제2조에서는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를 이 조약에 따른 인도 대상 범죄로 규정하면서, 인도 청구가 인도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당사자가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 중인 사람과 관련되는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인 인도법」 제6조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등을 인도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남은 형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조약안 제3조에서는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군법에 따른 범죄이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는 아닌 경우를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조약안 제4조에서는 인도가 국방 또는 외교 사안과 관련하여 피청구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범죄인 인도를 거절해야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조약안과 「범죄인 인도법」 간에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이, 이 조약안은 국내법인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약안	관계 법령
제2조 인도 대상 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u>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이다.</u> 2. <u>인도 청구가 청구당사자가 인도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 중인 사람과 관련되는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u> 3. ~ 6. (생략) 제3조 절대적 거절 사유 1. 이 조약에 따른 인도는 다음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이거나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연관된 범죄라고 피청구당사자가 결정하는 경우 나. 도망범죄인이 해당 범죄 또는 자신의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와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된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 또는 영역이나 그 일부의 법에서 규정된 처벌을 받았거나 어느 국가 또는 영역의 권한 있는 재판소 또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u>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u>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는 당국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사면된 경우

다. 인도가 달리 허용될 수 있는 범죄를 이유로 인도가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망범죄인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 민족,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가 청구되었다고 피청구 당사자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도망범죄인이 인도되면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 민족,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처벌되거나 구금되거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피청구 당사자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군법에 따른 범죄이나 피청구당사자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는 아닌 경우, 또는

바. 형의 집행을 위하여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청구되고 그 도망범죄인이 궤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도망범죄인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있었으나 고의로 불출석한 경우, 또는
- 2) 도망범죄인이 인도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

2. (생략)

제4조 임의적 거절사유

이 조약에 따른 인도는 다음 상황에서 거절될 수 있다.

가. 도망범죄인이 피청구당사국의 관할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의심되는 범죄와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國家元首)·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

관련하여, 피청구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피청구당사국에서 진행 중 이거나 임박한 기소와 관련된 경우 나.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도망범죄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 다. 다음의 경우 1) 도망범죄인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 2) 도망범죄인에 대한 기소가 정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3) 범죄가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4) 도망범죄인의 연령 또는 건강과 관련한 예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의 경우 그리고 범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망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억압적이거나 과도한 처벌일 경우 라. <u>인도가 국방 또는 외교 사안과 관련하여 피청구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u>, 또는 마.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어느 한쪽 국가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졌고,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조약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